

第18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5.11.21. ~ 11.25.)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8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 I. 개회식3
- I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5
- II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15
- IV. 부 록
 - 1. 의사일정안 23
 -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5
 -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33
 - 4.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1
 - 5.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9
 - 6. 조례심사보고서 51
 - 7.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57
- V. 별 책 부 록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85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0분 개식)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 의사담당 김영구

(11시 02분 폐식)

지금부터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자리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11시 02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4.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
7.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영용 위원 외 3인 발의)
4.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교육감 제출)
5.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6.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의장 제의)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고규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교

[제185회-제1차 본회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서명범 부교육감님께서서는 국회 교육관련 협의차, 연희지역신북지담당관과 안성배 중등교육과장님께서서는 교육부 회의참석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인수차, 박영하 기획관리과장님과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영용 교육위원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

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2005년 11월 11일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임시회 집회공고 후 2005년 11월 14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에는 충청북도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및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고규강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8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06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례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11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회 활동과 의안관련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11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발언을 하는데 전달이 안됐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왜 안나와요? 제

가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다.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못 들으셨습니다. 의장님을 호칭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결정됐는데 뭐를 얘기시려고.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의견을 얘기 하려고.....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결정된 건데 뭘, 말씀해 보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간담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이 의사일정안이 있을 때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부로 나가는 의사일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마이크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 작동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의장님께 전달이 안됐고, 제가 위원들 사이에서, 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됐지만 외부로 나가는 의사일

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의장 고규강

어떤 일정이 변경됐어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23일날 조례 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일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문건이나 대외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3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첨 2)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4.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 5.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6.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계에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수정이유는 공무원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범위를 당초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 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 소속된 중안 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라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간결하게 하고자 동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 참 조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본청 서편 토지 3,160㎡로 향후 산남3지구 개발 및 인구유입에 따른 도로 계획성과 연결되는 토지로써 진·출입로 및 후문을 개설하고자 하며, 향후 청사 증축 및 장애인 통행로 부지 확보, 최근 완공한 제2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에 1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동 노송초 폐교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인 노근리 사건 추모비 건립 예정지로 영동군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고, 지역주민들 또한 노근리 의정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 조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별첨 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규장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기정 예산 1조 2,444억 6,355만 5,000원에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9,2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 2,808만원, 주민, 기관 등 부담수입이 7억 5,236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 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 등의 요인으로 398억 9,789만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무상교육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등 유아교육 지원 사업비로 18억 921만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 및

교구와 특수학급 설치 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등 특수교육 지원 사업비로 16억 4,500만원, 과학 고 탐구용 심화학습 지원 및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과학기자재 확충비로 4,670만원, 학교운동비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 8,479만원,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및 교원용 컴퓨터 교체 등 교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40억 6,060만원, 200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지원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7억 55만원, 화장실 개축 및 보수 23실, 교직원 공동주택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비로 22억 6,660만원, 6교 1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19억 9,850만원, 예비비로 129억 8,41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결손액을 충당하고자 예산절감 등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385억 4,101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 ▶ 참 조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끝에 실음)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1)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첨 2)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첨 3)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신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21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

(11시 22분)

●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은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0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별첨 2)
- ▶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별첨 3)
-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별첨 4)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 별 책 부 록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1)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5일 (금요일) 13시 00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3.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4.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영용 위원 외 3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교육감 제출)
3.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3시 00분 개의)

님께서는 병가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 의장 고규강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님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차 출장중으로,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13시 01분)

●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남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성영용 교육위원 외 3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안건과 11월 14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루도록 하고,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주요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경우 지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좀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의 보류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초 안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 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라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함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다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또한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여 이를 간결하게 하고자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출한 수정안으로 수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삼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3시 08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취득 및 처분사유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확인하신 바 있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3시 09분)

●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3차에 걸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444억 6,355만 5,000원에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9,22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 3,000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 2,808만 5,000원, 주민, 기관 등 부담수입이 7억 5,3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98억 9,78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별 재원내역은 심사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1억 5,876만원, 평생교육에 2억 3,278만 1,000원, 급여관리에 194억 6,321만 2,000원, 교육행정에 8억 6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면, 기타 경비는 129억 8,41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의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특수학급 설치 교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학교 현대화, 사이버 가정학급 지원, 학교 유해정보 차단시스

템 운영, 교원용 컴퓨터 교체, 학교 체육 활동 지원, 통학버스 교체, 농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비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 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교육재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예산결감액 및 낙찰 차액 등으로 발생한 세출예산 감액분과 자체 수입액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다만,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대상 학생이 불공평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고, 코시안 학생 및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본청 시설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14억 8,000만원에 대하여 건축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교육위원님과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제185회-제2차 본회의]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폐회)

○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훈,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과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시설과장 안세열.

※ 부 록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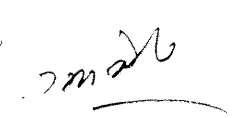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12. .

의 장 고 규 강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조 계 환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85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5. 11. 21.~11. 25.(5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11월 21일(월) (11:00)	<input type="checkbox"/> 개 회 식 [제1차 본회의] 1.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11. 21. ~ 11. 25.(5일간) 2. 충청북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input type="checkbox"/>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산·결산소위원회	제안설명 “ “ “
11월22일(화)	<input type="checkbox"/> 예산·결산소위원회	본회의 휴 회
11월23일(수)	<input type="checkbox"/> 조례심사소위원회	
11월24일(목)	<input type="checkbox"/> 의안관련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11월25일(금) (13:00)	[제2차 본회의] 1. 충청북교육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산 회 <input type="checkbox"/> 폐 회	

(별첨 2)

의안번호	제185-1호
의 결	2005. . .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이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영용 교육위원외 3명
발의연월일	2005. 11. 1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5-1
----------	-------

발의연월일 : 2005. 11. 11.

발 의 자 : 성영용 교육위원외 3명

1.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
-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직급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로 개정함(안 제3조 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로 한다.

제4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p>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조직) ①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u>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6. 1.12></u> ②~④(생략)</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직급별 정원은 <u>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정원규칙</u>으로 정한다.</p>	<p>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p> <p>제3조(조직)①....., <u>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④(현행과 같음)</p> <p>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직급별 정원은 「<u>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u>」으로 정한다.</p>

관 계 법 령 받 칙 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5 법률 7340호]

제17조 (의사국의 설치등) ①교육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국을 두고, 의사국에는 의사국장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의사국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④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임명한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4.1.29 대통령령 제18247호]

제10조 (교육위원회 의사국)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수, 직급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0.2.28>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①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0.2.28>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청과의 균형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도록 할 것
2. 업무의 성질·난이도 및 책임도등을 참작할 것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할 것.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복수 직급으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기간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위원회 의사국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학교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시·도 교육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1.29>

1.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2.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②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범위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기관별로 당해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그 결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수 있다.

각 시·도별 의사국장 정원 현황(제3조 제1항 관련)

일련 번호	구 분	교육위원 정수	의사국장 (정원)				현 원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 서기관	지방 부이사관	지방 서기관
1	서울	15	1				1	
2	부산	11		1			1	
3	대구	9			1			1
4	인천	9		1				1
5	대전	7			1			1
6	광주	7			1			1
7	울산	7			1			1
8	경기	13			1			1
9	강원	9			1			1
10	충북	7		1				1
11	충남	9			1			1
12	전북	9			1			1
13	전남	9				1		1
14	경북	9			1			1
15	경남	9			1			1
16	제주	7			1			1
계		146	1	3	11	1	2	14

(별첨 3)

의안번호	제/제~제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1월 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84-2
----------	-------

제출연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수정이유

-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당초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한다」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동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수정주요내용

- 가.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 나.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함(부칙안 제3조)

□ 수정조례안 : 붙 임

□ 참고사항

- 수정안 조문대비표 : 붙임
-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 : 붙임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 부칙 제3조제1항 내지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8조를 삭제 한다.
-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제10조를 삭제 한다.
- 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7조를 삭제 한다.
- 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제7조를 삭제 한다.
- 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제8조를 삭제 한다.
- 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제11조를 삭제 한다.
- 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를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정안
<p>제3조(수당) ①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u>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u> 지급한다.</p> <p>②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수당) ①----- ----- -----<u>다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u></p> <p>②(원안과 같음)</p> <p>③(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p> <p>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안과 같음)</p> <p>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8조를 삭제 한다.</p>

원 안	수정안
<p>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충청북도단체교육상 조례중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7조(실비변상)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충청북도단체교육상 조례중 제10조를 삭제 한다.</p> <p>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7조를 삭제 한다.</p> <p>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제7조를 삭제 한다.</p>

원 안	수정안
<p>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p> <p>조례중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p> <p>조례중 제8조를 삭제 한다.</p>
<p>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p> <p>조례중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p> <p>조례중 제11조를 삭제 한다.</p>
<p>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15조(실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를 삭제 한다.</p>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41~3 호
의결 연월일	2005년 월 일 (제 회)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5년 11월 일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41-3
----------	-------

제출연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1.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취 득

(단위 : m², 천원)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수 량	금 액
토 지	본 청	본청 서편부지 매입	3,160	1,480,000
합 계				1,480,000

나. 처 분

(단위 : m², 천원)

기 관 명	처분 재산명	구 분	소재지번	수 량	대장금액
영 동 교 육 청	노 송 초 폐 교	토 지	황간면 노근리 700	13,687	104,170
		건 물	외 1필지	1,080.48	64,700
		합 계		14,767.48	168,870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단위 : ㎡, 천원)

구 분		2006년상반기			2006년하반기			합 계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1	3,160.00	1,480,000			1	3,160.00	1,480,000
		건물								
		기타								
	1. 매입	토지	1	3,160.00	1,480,000			1	3,160.00	1,480,000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1	13,687.00	104,170			1	13,687.00	104,170
		건물	1	1,080.48	64,700			1	1,080.48	64,700
		기타								
	4. 매각	토지	1	13,687.00	104,170			1	13,687.00	104,170
		건물	1	1,080.48	64,700			1	1,080.48	64,700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토지								
		건물								
		기타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정금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 득 소유자	비 고
	기 관 명	구분	소재지번	수 량					
1	본 청	토 지	상당구 산남동 12외 3필지	3,160.00	1,480,000	2006년 상반기	진입로, 후문개설	교육감	도면 1쪽
합 계		건 물		3,160.00	1,4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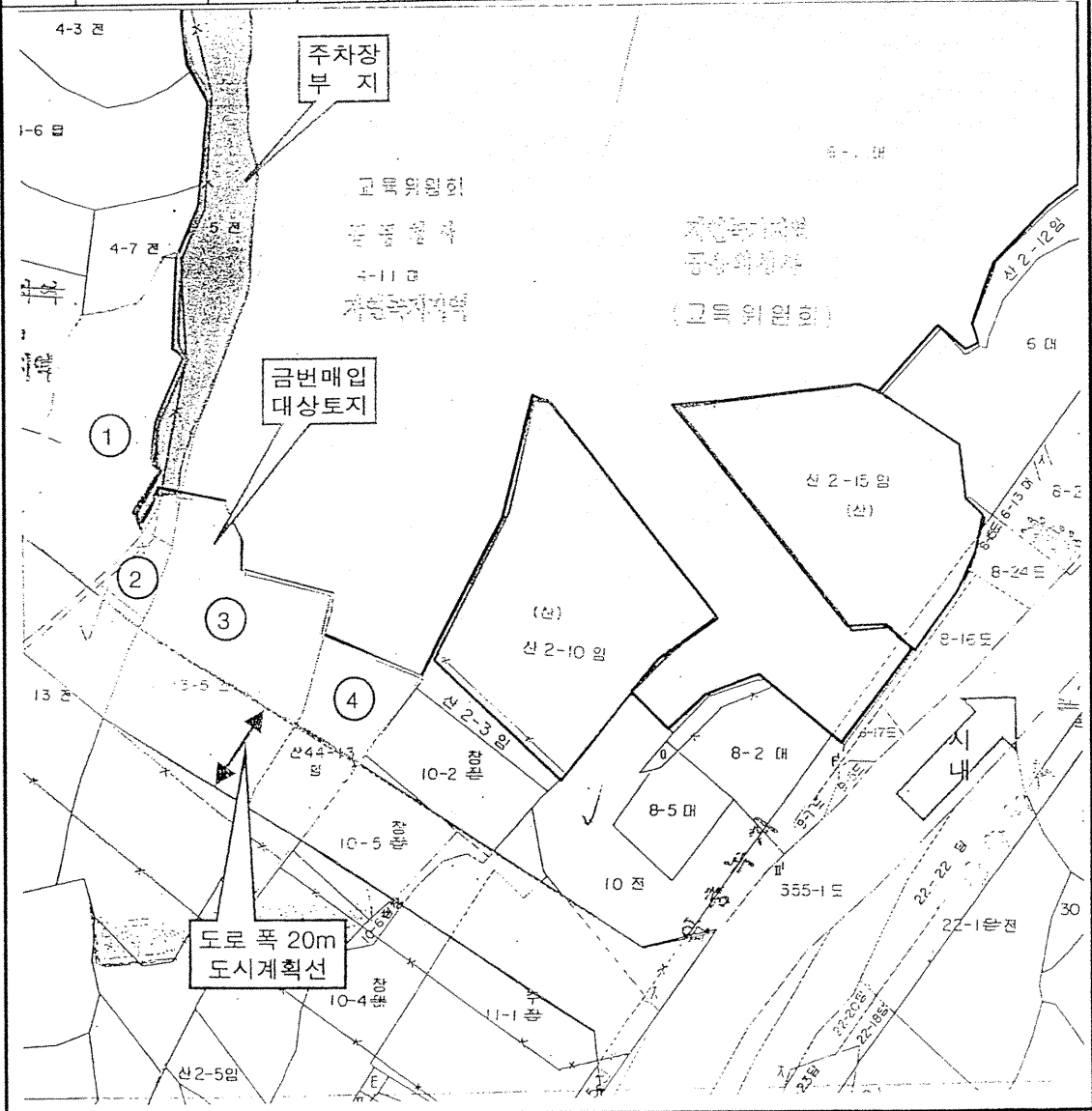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장 금 액	처 분 시 기	처 분 사 유	매 입 요 청 자	비 고
	기관명	구분	소 재 지	수 량					
1	노송초 폐 교	토지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외 2필지	13,687.00	104,170	2006년 상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영동군청의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영동군청	도면 2쪽
		건물		1,080.48	64,700				도면 3쪽
		소계		14,767.48	168,870				
합 계		토지		13,687.00	104,170				
		건물		1,080.48	64,700				
		소계		14,767.48	168,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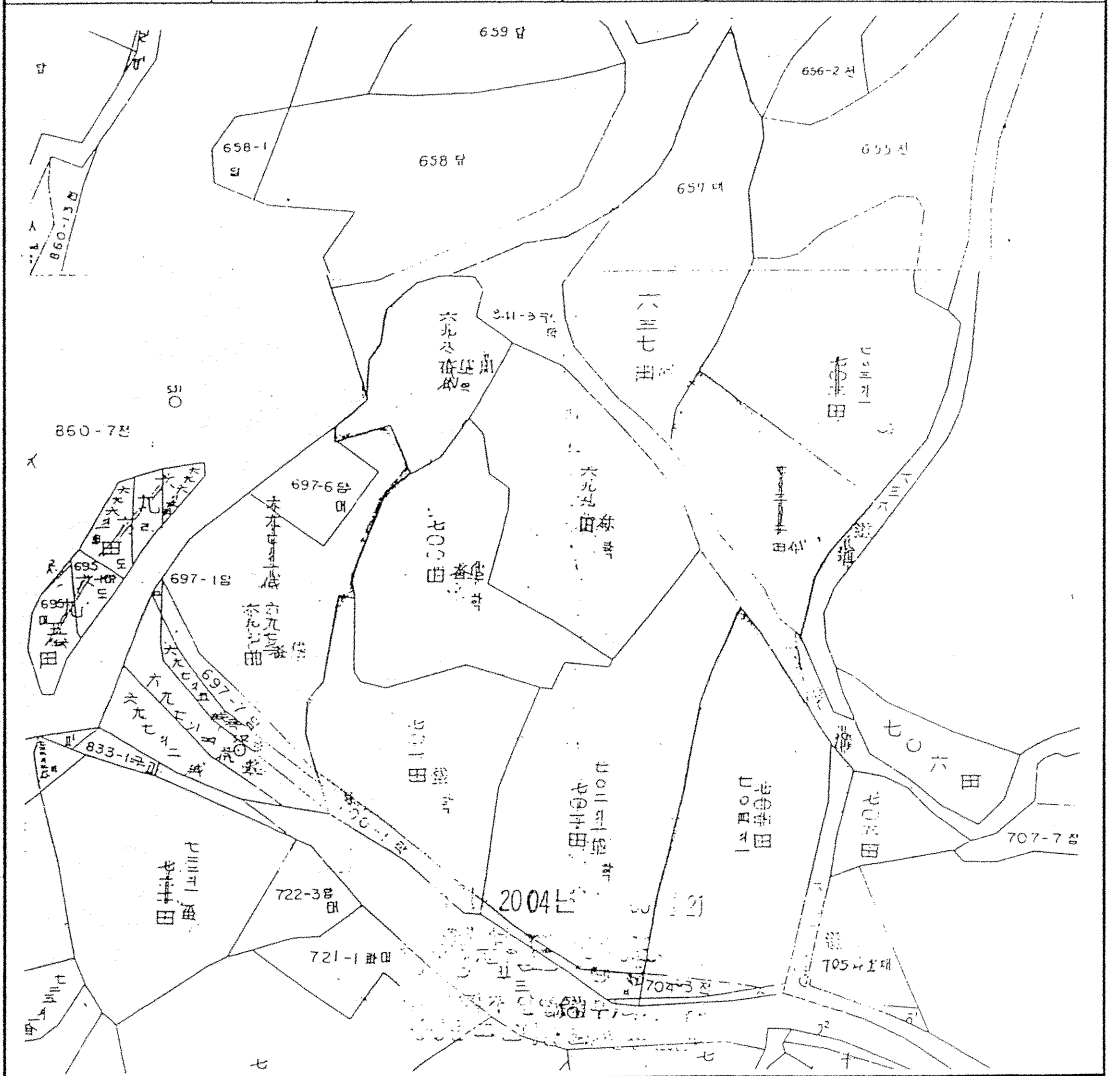
(1) 본청 토지 취득 위치도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추정금액 (천원)	사유
1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12	전	1,400	655,650	○ 진입로, 후문 개설 부지 확보 ○ 향후 육아 보육시설 및 청사 증축 부지 확보 ○ 현 청사의 차량 출입로 변경으로 장애인 통행로 확보
2		13	전	250	117,800	
3		13-5	전	1,100	516,150	
4		44-13	전	410	190,400	
계				3,160	1,48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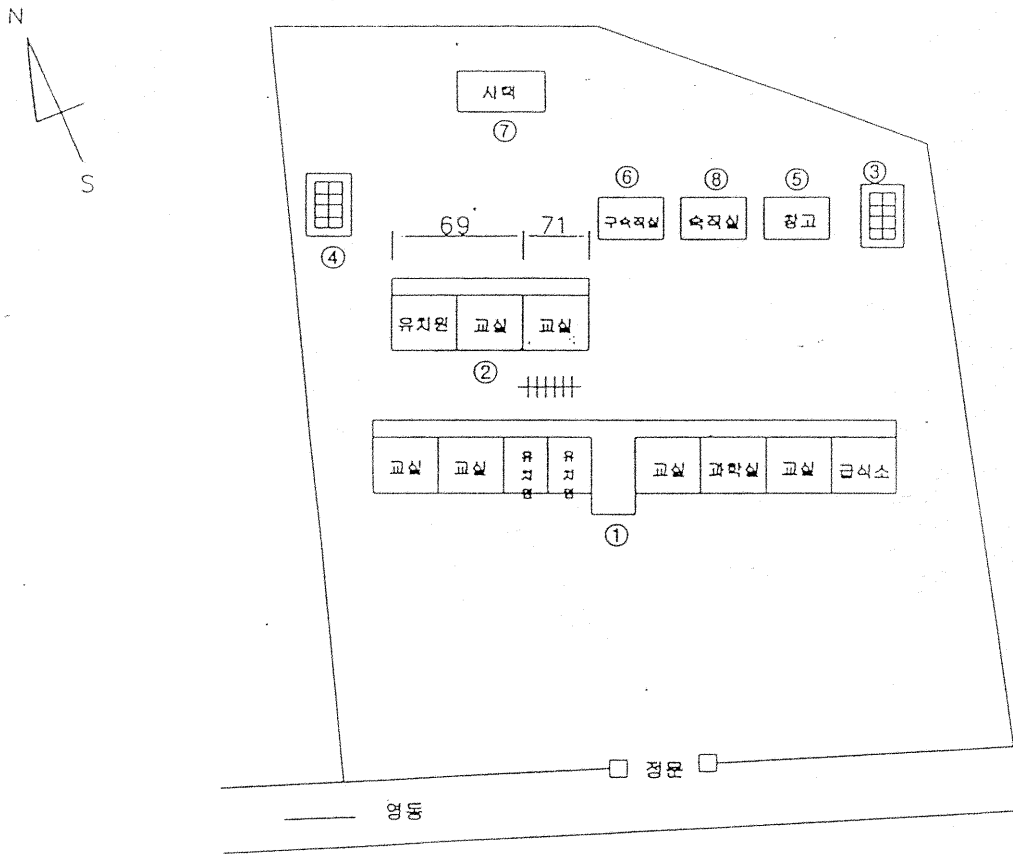
(2) 노송초 폐교 토지 처분 위치도

소재지	지번	지목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유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700	학	10,160	74,4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보 ○ 영동군청의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657	대	3,527	29,697	
계			13,687	104,170	



(3) 노송초 폐교 건물 처분 배치도

소재지번	번호	용도	구조	건축 년도	수량 (㎡)	대장금액 (천원)	사 유
영동군 영동면 노근리 700	1	교사	시벽스	1968	607.20	29,7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목적으로 활용 가치가 적음 ○ 부족한 교육재정 확대 ○ 영동군형의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2	교사	시벽스	1969	244.20	9,396	
	3	화장실	시벽스	1979	27.00	4,250	
	4	화장실	시벽스	1970	46.20	1,538	
	5	창고	시벽스	1972	46.20	1,164	
	6	구숙직실	시벽스	1970	41.30	5,758	
	7	사택	시벽스	1970	49.50	2,647	
	8	숙직실	시벽스	1991	18.88	10,163	
계					1,080.48	64,700	



(별첨 5)

의안번호	제 185~4 호
의 결 연 월 일	2005. 11. . (제 회)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연월일	2005. 11. .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85-4
----------	-------

제출연월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2,444억 6,355만 5천원에서 116억 7,125만 8천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9,229만 7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 3천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 2,808만 5천원, 자체수입 △398억 9,789만 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 수입 및 기타 7억 5,236만 7천원 계상
-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1억 5,876만원, 평생교육 △2억 3,278만 1천원, 급여관리 △194억 6,321만 2천원, 교육행정 △8억 674천원, 기타경비 129억 8,416만 9천원 계상

예산(안) : 별책

사항별설명서 : 별책

(별첨 6)

제185회 임시회

조례 심사 보고서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5.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05년 11월 11일, 성영용 교육위원외 3명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1월 2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성영용 교육위원)

가. 개정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
-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직급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3조 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로 개정함(안 제3조 제1항)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도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 현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 되어 있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조정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14일, 충청북도교육감
-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1월 21일)
 -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2005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수정이유

-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 범위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당초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한다」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동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나. 수정주요내용

-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함.(안 제3조 제1항)
-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함(부칙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지난, 제177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 제정이유에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 있어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의보류”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 당초, 안 제3조 제1항 중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 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한다” 라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함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 또한,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여 이를 간결하게 하고자,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 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보완하여 제출한 수정안으로 수정이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7)

제18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2005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 11. 25.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2005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년 11월 11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상정 및 회부일자 : 2005년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다. 소위원회 심사

- 제1차 소위원회(2005년 11월 21일)
- 제2차 소위원회(2005년 11월 22일)
- 제3차 소위원회(2005년 11월 24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2,444억 6,355만 5천원에서 116억 7,125만 8천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9,229만 7천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 3천원,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 2,808만 5천원, 자체수입 △398억 9,789만 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및 기타 7억 5,236만 7천원 계상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41억 5,876만원, 평생교육 △2억 3,278만 1천원, 급여관리 △ 194억 6,321만 2천원, 교육행정 △8억 67만 4천원, 기타경비 129억 8,416만 9천원 계상.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생략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 예산규모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244,463,555천원보다 11,671,258천원이 감액된 1,232,792,29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232,792,297	1,244,463,555	△11,671,258	0.9% 감	

□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746,183천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8,728,085천원, 자체수입 △39,897,893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752,367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국가 부담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33,299,588	83.8	1,024,683,771	82.4	8,615,817	0.9
	지방교육양여금	0	0.0	0	0.0	0	0.0
	국고지원금	3,948,387	0.3	3,818,021	0.3	130,366	3.4
	소 계	1,037,247,975	84.1	1,028,501,792	82.7	8,746,183	0.9
일반회계 부담수입	법정전입금	112,804,085	9.2	94,076,000	7.6	18,728,085	19.9
	비법정전입금	394,913	0.0	394,913	0.0	0	0.0
	소 계	113,198,998	9.2	94,470,913	7.6	18,728,085	19.8
자체수입	재산수입	3,464,251	0.3	1,346,980	0.1	2,117,271	157.2
	입학금및수업료	26,171,915	2.1	26,171,915	2.1	0	0.0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331,960	0.1	1,331,960	0.1	0	0.0
	잡수입	6,789,569	0.6	6,124,581	0.5	664,988	10.9
	이월금	17,319,848	1.4	60,000,000	4.8	△42,680,152	△71.1
	소 계	55,077,543	4.5	94,975,436	7.6	△39,897,893	△42.0
지방교육채		26,515,414	2.1	26,515,414	2.1	0	0.0
주민(기관 등)부담수 입및 기타	기관(주민등)부담금	422,573	0.1	0	0.0	422,573	100.0
	기타지원금	329,794	0.0	0	0.0	329,794	100.0
	소 계	752,367	0.1	0	0.0	752,367	100.0
합	계	1,232,792,297	100.0	1,244,463,555	100.0	△11,671,258	△0.9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4,158,760천원, 평생교육 △232,781천원,

급여관리 △19,463,212천원, 교육행정 △800,674천원, 기타경비 12,984,16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	금 액	구성비 (%)	금 액	비율
학교교육	유 치 원	11,368,001	0.9	10,209,884	0.8	1,158,117	11.3
	초등학교	156,676,410	12.8	155,368,460	12.5	1,307,950	0.8
	중 학 교	80,970,380	6.6	77,551,482	6.2	3,418,898	4.4
	고등학교	57,865,118	4.7	68,540,422	5.5	△10,675,304	△15.6
	특수학교	5,545,891	0.4	4,914,212	0.4	631,679	12.9
	기타학교	244,108	0.0	244,208	0.0	△100	0.0
	소 계	312,669,908	25.4	316,828,668	25.4	△4,158,760	△1.3
평생교육	평생교육	2,910,659	0.2	3,143,440	0.3	△232,781	△7.4
	소 계	2,910,659	0.2	3,143,440	0.3	△232,781	△7.4
급여관리	급여관리	825,084,282	67.0	844,547,494	67.9	△19,463,212	△2.3
	소 계	825,084,282	67.0	844,547,494	67.9	△19,463,212	△2.3
교육행정	교육위원회	419,933	0.0	448,813	0.0	△28,880	△6.4
	본 청	23,638,975	1.9	23,416,729	1.9	222,246	0.9
	지역교육청	6,292,154	0.5	7,029,532	0.6	△737,378	△10.5
	교육지원기관	29,617,098	2.4	29,873,760	2.4	△256,662	△0.9
	소 계	59,968,160	4.8	60,768,834	4.9	△800,674	△1.3
기타경비	지방채상환	11,194,741	0.9	11,194,741	0.9	0	0.0
	예 비 비	20,964,547	1.7	7,980,378	0.6	12,984,169	162.7
	소 계	32,159,288	2.6	19,175,119	1.5	12,984,169	67.7
합 계	1,232,792,297	100.0	1,244,463,555	100.0	△11,671,258	△0.9	

□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 유치원 무상교육비	1,169,210천원
○ 유치원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6대)	240,000천원
○ 유치원종일반 환경개선	400,000천원
○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재·교구(8교)	360,000천원
○ 유치원 특수교육용 교재·교구(22교)	66,000천원
○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101교)	739,000천원
○ 특수학급 현대화(1교)	480,000천원
○ 과학고 R&E 지원	30,000천원
○ 실습기자재 확충(1교)	16,700천원
○ 학교운동부 지원	275,084천원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념 문화행사 지원	9,710천원
○ 대학과목 선이수(AP)제도 시범운영	60,000천원
○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	450,000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4교)	70,000천원
○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515,000천원
○ 교원용 컴퓨터 교체(2,043대)	2,451,600천원
○ 통학버스 교체(11대)	514,000천원
○ 2006.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	422,573천원
○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충북협의회 구성·운영	10,000천원
○ 학교 CEO 수준별 교육과정 연수	12,000천원
○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지원	63,500천원
○ 학교 유해정보차단 시스템 운영(485교)	137,483천원
○ 평생교육 우수프로그램 지원	10,000천원
○ 학생중식지원	45,000천원
○ 화장실 보수(20실)	1,048,000천원
○ 화장실 개축(3실)	312,880천원
○ 교직원 공동주택 신축(1동)	203,900천원
○ 다목적교실 보수(1교)	400,000천원
○ 운동부 휴게시설 신축(1교)	301,820천원
○ 사유지 매입(6교, 1기관)	1,998,502천원

나. 종합의견

- 금번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유치원 종일반 시설환경 개선 지원,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과 특수학교 현대화,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 학교 유해정보차단시스템 운영, 교원용 컴퓨터 교체, 학교체육활동 지원, 통학버스 교체, 농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비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교육재정을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한 결과, 예산절감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세출예산 감액분과 자체수입액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하고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나,
 - 다만, 저소득층자녀 학비를 지원함에 있어 대상학생이 불공평한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코시안 학생 및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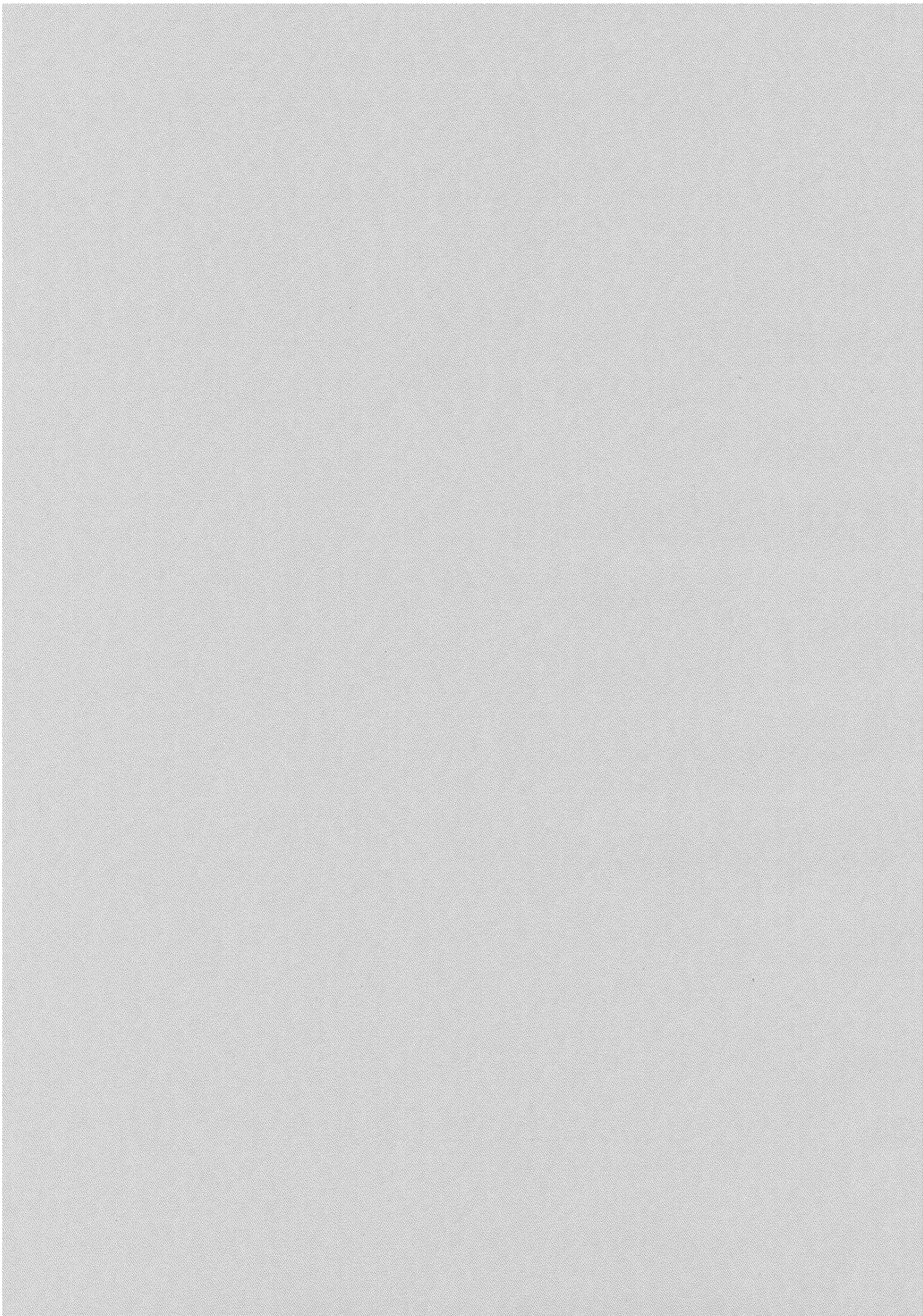
7. 소수의견 주요내용 : 본청 시설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14억 8천만원에 대하여 건축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第18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67
I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71
III.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79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年 11월 21일 (월요일) 11시 31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1분 개회) 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김남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남훈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33분)

● 위원장 김남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송대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간사 송대헌

조례심사소위원회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35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의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의건을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 위원장 김남훈

좌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11월 24일 목요일 2일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제출한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4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송대헌,
위 원 성영용,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1명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 부 록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본 위

(11시 50분 산회)

條例審查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年 11월 24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 00분 개회)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제안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진옥경 위원

요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59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원칙이 나오거든요.

● 위원장 김남훈

지금 아니고 교육위원회 그것만 질문하세요.

● 진옥경 위원

아, 교육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음에 요것 처리하고서 다음에

● 진옥경 위원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말씀 안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회실비변상조례에대한수정안

(11시 02분)

● 위원장 김남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2005년 3월 31일 제177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서 심의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수정안을 제출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수당의 지급범위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당초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부칙에서 기존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조례의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

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형식면에서 복잡하여 간결하게 하고자 부칙에 명시된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 주요내용은 제3조 수당 제1항의 단서인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게 전에는 교육청 안에서도 타부서에 소관된 것은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제 교육감 소속이나 교육위원회 소속에 대한 공무원 전체를 수당을 안 주는 얘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요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7개밖에 없습니까? 7개 더 이상.....

●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34개가 있고 비 법정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법정이든 비 법정이든 간에 각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7개 위원회밖에 없는 건지 그 이외 어떻습니까, 그거는 왜 일곱으로 한정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

●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기존 조례에 실비변상 조례항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전에는 지난번에는 7개 조항 끄트머리에 가서 준다고 개정을 했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요번에 삭제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고, 기타 그 사항은 그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기존 7개 있는 것은 그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번에 그 조례는 전부 삭제하고 현재 요수정안 실비변상조례위원회 전체로 통합해서, 각종 위원회가 예산범위 내에서 에

산이 허락하면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부 통일을 하게 된 것이죠.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소속 공무원을 일선에 중·고등학교 교장이 교육청에서 소집하는 위원회에 들어와 갖고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는 그것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봐서 그분도 안주고 여비만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예를 들면 우리 총무과 소관사항의 인사위원회에서 타 과장이 위원으로 위촉됐을 때는 자기 소관사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됐던 것인데, 이제는 세출예산지침에 보면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타부서의 위원으로 갈 때는 주더라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전체로 위원이 됐을 때는 여비하고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고 또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요번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부합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역교육청에서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이 됐다 그때

과거에는 내 소관사무가 아니라 그래 가지고 줬는데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의 위원으로 됐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타 부처는.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남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 때 운영수당에 우리 감독관의 수당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이상기

네, 있습니다.

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 성영용 위원

요런 것도 어쨌든 같은 교육청업무에 관계된 건데 이런 부분에도 나갑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수능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추진하는 거기 때문

에 거기에 별도로 거기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 **성영용 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에

● **성영용 위원**

어떤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그 평가원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가해서 국책사업을 수당하는데 따라서 거기에 감독수당은 얼마이다 해서 거기에서는 이 위원회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 **성영용 위원**

실제 예산절감 및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상기**

네, 그렇습니다.

● **성영용 위원**

실제 이 운영수당이 우리 3억 472만원 정도 매년 이래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잡부수당 같은 건 관계없는데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 교육계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영수당을 타 간다 그러면서 한 3억씩이나 지출이 된다는 부분은, 모든 급여하고 중복되어서 이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포함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수능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비가 지출이 안 되고 거기에 규정된 일당, 수당만 지금.....

● **성영용 위원**

여비도 있어요. 여기도 여비도 다 나오는데.....

● **총무과장 이상기**

여비는 자기가 어떤 업무에 했을 때하고 그 당일에는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은 국가적으로 교육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위임받아가지고 시·도교육청은 위임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배부 받아서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성영용 위원**

물론 많이 줘서 나쁜 건 없지만 중복되어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릴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 진옥경 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반영해 주셔서 잘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비변상 조례안과 관련한 참고자료 목록을 이렇게 진작에 마련해서 주셨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질의응답이나 논란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유가 2005년도 저희한테 주신 각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서에 보면, 수정이유가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거한 이 부분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 수정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작년의 수정이유보다는 오히려 이유로 말하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구절이 들어 있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이유로 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진 위원님 말씀도 수정이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원칙은 세출예산이 그렇게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이유를 첫째 뒀고, 또 두 번째는 부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별도로 부칙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좀더 간결하게 또 통합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이유를 두고, 거기에 가서 나중에 조문에 가서는 사항을 우리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진 위원님 말씀도 수정이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여기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수정이유를 명시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2006년도의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신가요?

●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죠.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남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남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남훈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계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훈, 간사 송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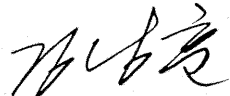
위원 성영용,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2명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5. 12. .

위원장 김 남 훈 

(별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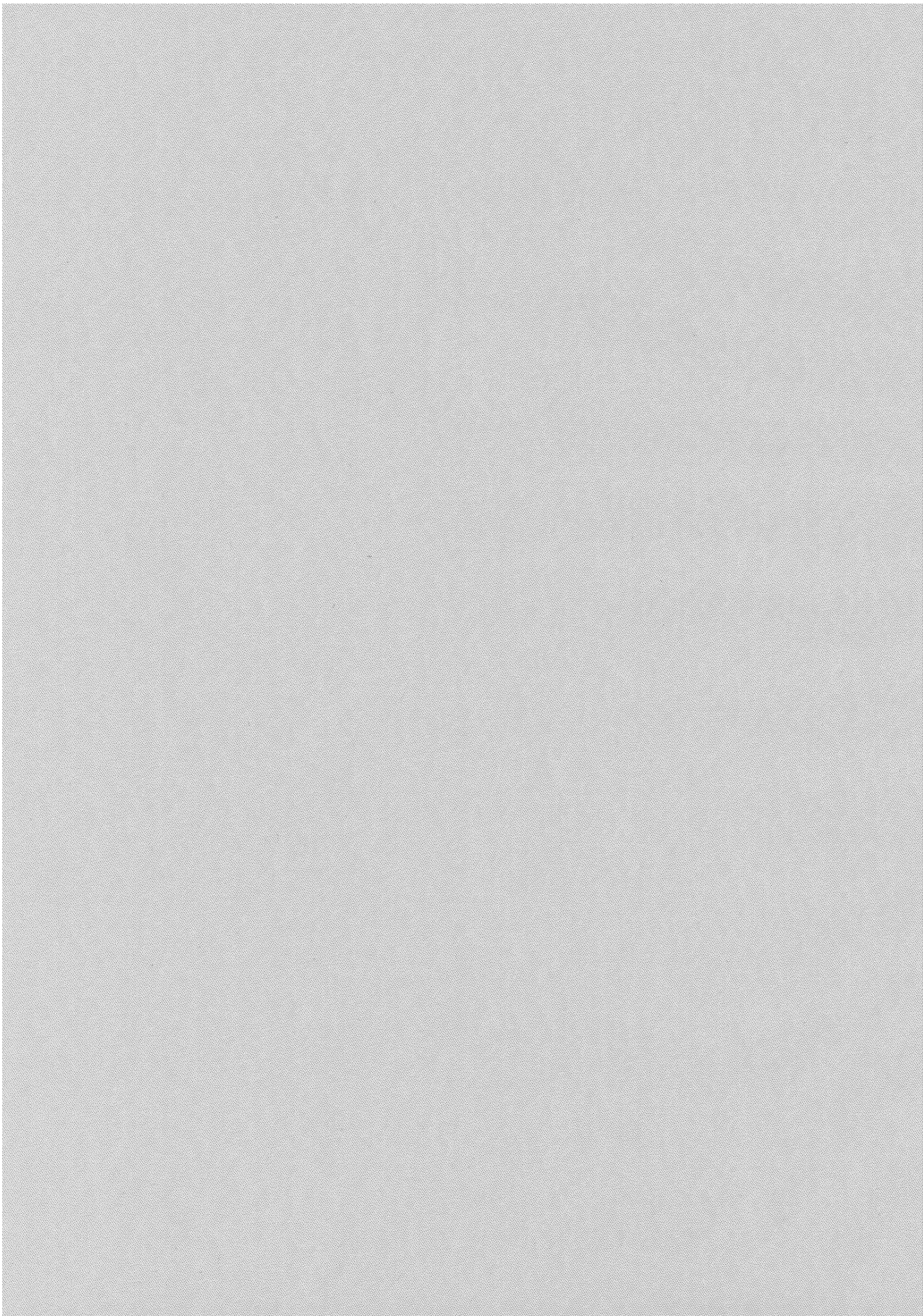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11.21.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11.24. (목) 11:00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第185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 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85
I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89
III.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33
IV.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137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11시 50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50분 개회) 습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로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현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교육 사업에 차질 없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11시 53분)

●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현 위원

김남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이번 추경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시 55분)

●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11월 24일

3일간으로 하여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위
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2
일 11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2005년도제3
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으며, 또한 11월 24일 오후 2시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훈,

위 원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부 록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2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회)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웅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파견으로 공보감사담당관님, 초등교육과장님, 과학실업교육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영웅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 조 :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훈

김남훈 교육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2페이지 실행세출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위원회를 비롯해서 직속기관까지 삭감액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직속기관 삭감

내역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속기관이 90.5%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본청 같은 데는 97.3%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직속기관만 이렇게 삭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 평균으로 볼 때 본청이 97.3%, 직속기관이 90.5%, 지역교육청이 95.6% 그래서 평균 96.9%가 되겠습니다.

유독 직속기관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목적사업비를 학교 회계로 전출함으로써 끝나는 사업이 많은 반면, 직속기관은 기관운영비 10%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간사 김남훈

알았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을 보면 특수학급 설치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갖다 지원하도록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6개교, 중학교 27개교,

고등학교 8개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재원 배분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저는 표시가 되어 있지 못해서 찾아 찾아 못 찾았는데 이 고등학교 8개교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52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쪽에.....

● 간사 김남훈

52쪽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본청이 고등학교 분이거든요.

● 간사 김남훈

거기 보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있고 공립교 8개교 그것, 근데 어떤 학교라는 것이 다른 건 다 나타났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요계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용이.

● 간사 김남훈

69페이지에?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 간사 김남훈

그런데 2005년도 시설사업현황 해서 3회 추경에서 다른 자료는 이 시설사업비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여기에 표시가 안됐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사업량이 101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1교를 이번 추경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특수학교 학급이나 이것이 시설사업이 100% 완료되는 겁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비가 도내에 142개 학급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설치되기 전에는 66.6%인데 승강기와 경사로를 제외한 시설물은 100%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간사 김남훈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신체장애 어린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일반학교에도 신체장애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에는 경사로나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해놓을 때도 있고 또 일반학교에도 해놓을 때가 있다고 보는데, 특수학급의 학생 수를 보면 보통 5명 내지 10명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청주시내의 큰 학교 같은데 보면 특수학급에는 편성이 안됐지만 신체장애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 이런 것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지금 특수학급이 142개 학급 140개교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15개교가 1층이 아닌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학교는 내년서부터 전부 다 1층으로 이동하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요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140개교에 일반학교에는 전부 다 100% 설치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남훈**

신체장애 관계없이 특수학급이나 학교에는 우선적으로 해 준다 이 얘기죠, 지금 현재.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입니다.

● **간사 김남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61페이지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초등교육과도 마찬가지인데 연구시범학교 보편은 당초 2005년도 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3억 8,000 그리고 추경 예산에 4억 2,000 이렇게 책정됐단 말이지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연구학교운영비 지원으로다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4억 2,000으로다 많아지는 이유가, 무슨 사업을 하길

래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아집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사회복지사활용 연구시범학교가 기 지정 이후에 추가로 2개교가 지정됐기 때문에 한 학교당 2,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 **간사 김남훈**

추가로다 연구학교 지정받은 학교, 그럼 지금서 추경이 된다고 하면 뭘 가지고서 이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했나요?

어떤 예산 가지고서

● **교육국장 노재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겁니다, 이게.

● **간사 김남훈**

먼저번에 2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3차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럼 연구학교 지정을 갖다가 2차 추경 이후에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 **교육국장 노재전**

그게 1회 추경 때가 확정이 안됐고 2차 추경 때는 그 BTL사업 때문에 그때 반영치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3차 추경에 이렇게 됐습니다.

● **간사 김남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구시범학교라고 하면은 것은 학년초에 다 지정을 받아서 연구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3차 추경에 연구학교 육성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그 동안에는 연구시범학교에서는 어떠한 예산으로다가 연구추진을 했느냐 이거예요.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시범학교 지정 이후에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있지만 사전에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 간사 김남훈

예산이 확보됐는데 2차 추경에도 성립전으로 안 올라왔죠.

● 교육국장 노재전

예.

● 간사 김남훈

그럼 2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BTL사업만 가지고 2차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 간사 김남훈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시급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집행하는 금액인데,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년초에 지정 받아놓고서 지금까지 예산을 배분했다는 것은 BTL이 됐던 뭐가 됐던 어

떤 사업이 됐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바로 성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 간사 김남훈

그 성립전 예산을 배분한 날짜가 언제예요, 성립전 예산을 추가로 지정받은 연구학교에 배부한 날짜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남훈

그럼 있다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총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요것은 언제부터 발족행사 1회에 협의회 3회에 1,000만원인데, 이 대상이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총북협의회 위원 20명인데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총북협의회가 발족된 게 10월입니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4대 폭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일소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이게 조직된

것으로써,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기에 따른 발족행사하고 협의회 비용으로 이걸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 실시하고 협의회를 3회 개최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를 교부 받은 겁니다.

● **간사 김남훈**

이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적에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필요한 기구라고 보는데 구성인원의 요인은 뭐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정되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도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5명은 전부 청소년단체 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남훈**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81페이지 교원용 컴퓨터 교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교원용 컴퓨터 교체로다 추경예산에 2,043대를 교체 구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단재교육연수원의 교원용 연수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갖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들어갔습니다.”라고

말함)

들어갔습니까?

근데 그 내역을 쪽 보니까 없던데요.

단재교육연수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에 지금 컴퓨터 100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 **간사 김남훈**

근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거는 별도로다가 관서운영비로 줬다고요, 100대요.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농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에는 농촌 공립유치원이라고 했는데 통학버스가 6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농촌 공립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또 6개 학교에 해당되는 그 학교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유치원 중 통학버스가 없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6개 유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유아생들이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6개 학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 **간사 김남훈**

금년에 6대 버스를 갖다가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해당되는 학교는 하나도 없나요, 임차료를 갖다가 구입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학교?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6개 외에는 없습니다. 6개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초등학교, 이원초, 부용초, 동인초, 수봉초, 상산초등학교 해서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 **간사 김남훈**

기타 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 **간사 김남훈**

그럼 요거 하면 통학버스문제는 다 해결된다 얘기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아니죠.

이건 농촌 학교니까 앞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확대가 되면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간사 김남훈**

지금 보니까 오창이나 수봉이나 이런 데는 지금 농촌 학교로 지정이 안됐는데, 아무리 분교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가 얼마든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선 순위로다가 지원해 준 데는 그만한 이

유가 있을 텐데.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

● **간사 김남훈**

종일반을 지정받지 않는 학교는 해당이 없는 거구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간사 김남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운동부 휴게실 확충에 대해서 거기 보면 스프링쿨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언급한 건데 근데 이 스프링쿨러 시설비가 다 제각각입니다. 다목적교실 하면 다목적교실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 다 통일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학교입니까 보면은 여기는 1억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설계비, 소방감리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2006년도 예산에 보면 남일초등학교는 9,040만원, 예성초등학교는 7,8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많게는 3,0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1,2백 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몰라도 3,0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금번 합숙소에 스프링쿨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예성여중의 숙소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에 들어가는 스프링쿨러 시설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간사 김남훈**

합숙소 면적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합숙소 방마다 이렇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 **시설과장 안세열**

방마다 전부 들어갑니다. 방하고 복도하고 전체에 스프링쿨러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 **간사 김남훈**

나머지는 다른 데는 다목적교실이고 여기는 합숙소라 아주 세분해서 스프링쿨러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김남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요번 추경안을 검토 해봤더니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지를 사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

분은 우리 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이렇게 파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잘 몰라서 사게 되든지 편입되어서 이렇게 보상을 다시 받든지 간에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살 적이나 팔 적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예산서에 지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 **송대헌 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평가금액입니다.

● **송대헌 위원**

그럼 도로 편입되는 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고 사유지를 매입할 때도.....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평가금액으로

● **송대헌 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용기관이 따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평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매각하

거나 합니다.

● 송대헌 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팔 적에 보상도 그렇게 받고 팔 적에 그렇게 한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송대헌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송대헌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만 들어보면 우리 교육청 서편에 사유지를 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4억을 이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절차가 물론 사유지니까 교육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테고 우리는 또 한 없이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가격이 절충되어야 서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하는 기관, 그거로 해서 감정 가격이 나왔을 적에 파는 사람이 나 이 돈에 못 팔겠다 이 감정이 가지고는 이럴 부분도 생길 수 있겠고, 아니면 사전에 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 정도는 주시오 얼마 주면 팔겠소 이렇게 되어서 하는 것인지, 우리 꼭 필요해서 사야될 부

분이거든요. 그 땅이 우리로서는 꼭 필요하고 해야 하는데 개인 땅을 함부로 강제로 사자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공시지가라는 건 상당히 낮아서 공시지가로는 안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감정평가사가 한다는 건 현 시세에 접근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80% 수준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금액에도 사유지 재산 가진 사람이 파는 것인지 이런 부분 잘 몰라서 매입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의 사유지 매입하는 문제는 사전에 실무진하고 그쪽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금액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개략적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그건 감정사가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한다면.....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아니 서로 협의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사고 팔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 동의를 소유주가 했기 때문에.....

● 송대헌 위원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팔겠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정사가 공인된 감정사가, 지금 보니까 약 1,000평되니까 약입니다. 약140만

원 평당가격 대개 어림 추산으로 되더군요. 그곳이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140만원정도 가느냐 하는 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 주겠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다 그러면 살 수 있겠네요, 합의가 됐다면.

또 마찬가지로 중앙도서관에 한 100평이 도로편입이라고 하는데 나는 중앙도서관 가봤지만 어디에 도로편입이 중앙도서관에 한 100평이 들어갈 때가 있나요, 우리가 보상은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디 쪽입니까, 중앙도서관.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제가 근방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치를 압니다.

중앙도서관의 정문하고 그 옆에 정문에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조그만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쪽 내려가다 보면 국보계약 골목하고 맞닿는데 거기서부터 그 도로를 12m인가 확장을 해서 소방도로를 냅니다. 소방도로를 내면 중앙도서관에 그 걸 지나가게 되는데 웅벽하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쪽 경계선을 따라서 찢쭈하게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 송대현 위원

아, 정문 밖의 도로 쪽에 포함되는, 그 때에도 말하자면 시에는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평가사가 이렇게 결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받습니까?

● 총무과장 이상기

거기서도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기관 2개 이상을 해서 평균을 내서 아마 거기서 이렇게 할 겁니다.

● 송대현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팔든 사든 간에 동일한 기준으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할 겸 이렇게 한번 여쭙봤습니다.

하여튼 사고 파는 부분이 많이 예산서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수입 쪽에 34쪽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잡수입이 들어온 게 있어요. 34쪽에 주요사항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34쪽 하단이구만요. 잡수입에 본청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4,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 재해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부분입니까?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입니다.

지난 음성중학교 강당 화재 났을 때 재해복구비 수령액이 5억 1,000만원, 그리고 충주고 급식소 화재 났을 때 1억 8,000만원, 그리고 진천 덕산중 정구부

휴게소 및 창고 화재 났을 때 1,900만원, 그리고 청원 문의중 특별실 화재 났을 때 1,100만원 해서 총 7억 2,900만원 나온 것입니다.

● 송대헌 위원

대충은 짐작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음성중학교 화재가 났던가 어디 등등해서 어디 보험에 들어서 재해복구비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산정해서 이거 가지고 재해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받으면 거기에 소요된 예산이 복구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고 재해복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인지 늘 보면 우리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해복구비는 그 중에 아주 조그맣게 되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쭙보는 건데, 대개 어떻습니까?

재해복구비 산정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거기다가 얼마를 더 보태서 이렇게 재해복구를 하는 것인지 늘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돈보다도 예산이 서너 군데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 저기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4,000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아까 7억은 전체 합친 거고, 요건 음성건가 어디 겁니까? 34쪽에 있는 잡수입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음성중학교하고 충주고등학교 것입니다.

● 송대헌 위원

음성중학교하고 충주고등학교 그러면 복구한데 투자한 액을 보면 알 겁니다. 양쪽에 얼마입니까, 양쪽에 복구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양해만 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대헌 위원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이건 들어간 부분을 뺄 수도 없고 사실대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중학교 다목적교실 복구비 지원으로 저희들이 7억 2,946만 2,000원이 지원이 됐고, 충주고등학교 급식소는 6,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상금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우리야 많이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여튼 책정된 걸로

입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고 할 때는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공무원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대현 위원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김남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더 65쪽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1,000만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해 가지고 발족행사를 한 번하고 협의회를 세 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원, 위원은 20명이라고 아까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으로 이렇게 구성하라고 하니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캠페인하고 협의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각 유관기관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우리 폭력 없애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연 그렇게 캠페인 행사하고 협의회 이것이 효율성 면에서 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가뜰이나 요즘 우리 충북이 이상

하게 폭력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실은 우리 충북이 이렇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폭력이 많은 도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교롭게 충주의 그 문제가 학생이 하나 죽고 한 그 뒤처리 문제 등등해서 이상하게 전국 네트워크를 타다 보니까 아주 폭력이 많은 도처럼 낙인찍어지고, 거기다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사위에서 또 방문도 하고 도의원들도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운데, 엇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내적으로 교육위원들 여기 여섯 분이 있습니다마는 대내적으로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집행청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마찬가지로 대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집행청과 같은 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받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마음이 언짢아요. 그런 것이 보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 폭력의 문제들이 자꾸 나는데 언짢은데 또 어차피 보도될 문제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또 엇그제 애가 하나 죽었다고 그러고 어제 저녁에 그런 거에 대한 보도가 크게 떠들 겁니다. 또 초등학생 하나 죽었다, 꼭 가정 생활지도의 근본은 밤에 가서 축

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 학교교육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가정교육이 저는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까 이런 협의처럼 관심 사회적인 공감대 관심을 갖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정교육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적으로는 생명의 윤리 최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는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죠. 근데 이런 일과성 행사 이렇게 캠페인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는 실속 있게 움직여지는데 예산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국장님 가시면 단체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에 힘을 쓸 수 있는 쪽으로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위원들을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어떤 사람들이나 말씀을 해 주시죠.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그 위원들은 당연위원 정부기관에서 4명과 그리고 위촉위원은 민간단체에서 15명해서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교수들의 연찬회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 교사들의 캠페인 그리고 초·중·고

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성개발 그리고 청주시내 20개 학교에 대해서 폭력추방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줄 계획이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에게 폭력추방 우수사례 시상 및 사례집 발간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다양하네요. 좋고 거기에 위원이 기자 들어있습니까?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위원은 지금 여기는 기자 없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한 명 있습니다. 언론인 있습니다.

● **송대헌 위원**

언론인 넣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인 좀 들어가서 홍보도 해 주고 또 보도할 부분도 자제해서 해야할 부분을 과장 보도해서 괜히 불안하게 한다던가, 실제로 우리 충북이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언론인도 많이 위원회 20명 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알고 우리 가정교육에서 해야할 책무도 어떤 부분인가 알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웅**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0.9% 감액해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1차 추경예산보다 감액된 예산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자체예산 46억하고 특별보조금 92억 해서 138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되지 않은 걸로 예산을 훑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편성하신 예산이 사실 3차 추가경정예산이면 결국은 마지막 추경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불용액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을 줄이려면 마지막 추경에서 잘 검토해서 사항별로 봐서 삭감할 곳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거의 용도에 맞게끔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만이 그 예산 자체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에 대한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상당히 어렵게 건축재정을 저희들이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이 158억 또 시설비 집행잔액이 6억 9,000 또 집행잔액 사업을 하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219억 해서 총 385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요번 추경에, 그래서 결산을 내년에 해보면 아주 잔액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요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요번 조정한 금액에서 129억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비비가 한 60억 되는데 요거를 180억을 예비비로 확보를 했는데 요 예비비는 내년도 저희들이 세 계잉여금을 18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도 상당수 낮은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지 그거를 집행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그대로 이월되는 거지, 예비비는 그 성질상 저희들이

초과 집행액이나 예측하지 못한 경비를 집행하기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가 불용액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추경에 조정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재원이.

● 이기수 위원

예비비를 물론 초과 집행할 수 없지만 예비비를 일반사업비 쪽에다 편성해 갖고 예비비 불용액 쪽을 낮춰준다면 전체 불용액이 적고, 또 예산이라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이월한다는 게 잘 하는 일은 아니죠.

결국은 적정한 수준의 이월을 시켜 갖고서 물론 부족하게끔 예산을 집행해서 안 되겠고 모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당년에 다 집행이 되고 해야지, 만약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짰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치 못했다는 얘기에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하셔야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 재원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불용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일반사업에 편성된 기타과목은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대학과목 선이수 AP제도 시범 운영이라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이거는 국어 외 8과목을 대학에서 과학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이라든지 일반고등학교는 1,2학년 학생으로서 5%안에 드는 학생을 선발해 갖고서, 대학에서 미리 국어 외 8과목을 선수해서 나중에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는 교양과목으로 인정을 받아 갖고서 결국은 그 학점을 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이 142학점을 따라 하는데 조기졸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게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우리 충북 교육청에서는 충북대학에 의뢰해 갖고서 이걸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 학생이 충북대학을 안간다든지 타 대학을 갔을 경우에 학점인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수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이것이 고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충북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료증서만 발급했지 그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이기수 위원

법적인 뒷받침이 안돼서 그런 항목인데 물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갖고서 6,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을 내려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전부 살펴보니 이게 회의참석 자료비 3만 5,000원 5명에 8회, 일반운영비에서 인쇄비 또는 원고료, 용품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운영이 된다면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과목은 대학에서 설강을 해 갖고서 별도로 과목 설강할 필요가 없이 이 학생들 그대로 놓고서 그 다음 과목 설강을 한다면 나중에 학교에 들어 갖고서 학점을 따 갖고 졸업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기존 학생들에 있는 교양과목의 과목 안에다 학생을 학점신청을 하게끔 해 갖고서, 만약에 학생

이 40명이라고 하든지 하면 그런 학생들을 분산 배치해 갖고서 그 교양과목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교수가 인정한 학점을 줄 수 있어야 만이 이게 효율적인 문제지, 별도로 대학에다가 그 과목을 설강해 갖고 여기 본다면 인쇄비니 원고료니 용품비라는 이것이 대학에서 선택하는 국어든지 일반 수학이든지 미·적분학이라든지 또는 영어라든지 교양영어라든지 이런 과목을 대학에서 취급하는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함으로써 그런 비용이 전혀 들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여기다 일부러 이런 애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원고료 지불하고 용품비 주고 또 업무추진하고 말이야 이걸 완전히 예산 낭비인 그런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이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학기가 있는데 대개 9월에서부터 12월까지 한 학기로 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한 학기로 보는데, 기간도 이게 어떻게 갖고 2005년 7월에서부터 12월이란 얘기는 이걸 방학중간에 시작해 갖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해 갖고 별도로 했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것까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 있게 운영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하나의 컨소시엄이라고 그럴까 교육청과 대학의 과학과 수학 지금 교양과목 수준이 아니라 우수학생들이 영재교육 차원에서 심층적인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교수들을 각 시·도에 배정을 해서 같이 공동 교재를 개발 연구한 겁니다.

그래 갖고 학생수준에 고등학교 수준보다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미·적분이라든지 또는 물리학이라든지, 지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해 갖고 과학고등학교 수준보다 높은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연구됐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그 책자 발간의 인쇄비 교재를 직접 대학교수들이 충북대학교수가 한 게 아닙니다. 충북대학에서 맡은 건 지학이면 지학 이렇게 대학별로 나누어 갖고 서울대에서는 생물을 개발했고, 이래서 수업진행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진행은 여기에는 7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지만 대학교수들이 강의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인데 금년에는 여름방학에 기 실시된 사항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하셨다면 9월월부터 12월까지는 그게 강의기간이 아닌 얘기를 7월월부터 12월이라고 여기서 표시한 것은 됩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1학기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됐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교육부에서 방학 전에 일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학과의 지원 체제 역할을 한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럼 방학이면 이게 그러면 6월월부터 8월말까지로 되어야 되지 이게 7월월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는 학기중이라는 얘기가 안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모순이 생깁니다.

뭐냐하면 그 학점인정체제로 간다고 했을 경우는 대학에서 받을 수 있는 교과과정에 걸맞는 얘기를 오퍼해 갖고서 거기서 학생들이 그것을 강의를 들어야 만이 그거 학점인정 하는 얘기지, 특수하게 만들어 갖고 했다면 그걸 어떻게 학점으로 대학에서 인정합니까?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그거는 별도의 어떤 다른 목적을 부여해야만 되는 얘기지, 그렇게 해 갖고 다른 교과내용을 다

르게끔 대학에서 설강한 커리큘럼과 다르게끔 했을 때는 그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얘기에요. 그거는 앞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장학사들과 교육부에서 각 16개 시·도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으로 과목을 그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선수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대학교의 학칙개정이 안 되고 교육부의 법적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요건 차후 연구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연구과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학에서 성질상 그런 내용이라고 하던지 하면 학생 141학점의 의무학점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앞뒤를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갖고서 학생들하고 결부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교육정책 자체가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해야죠. 이걸 누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켰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아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얘기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어거지로 붙여 갖고서 학점인정이라고 해 갖고서 대학에서도 이거 논의된 부분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 교양과목을 3학점씩 이수시키지 말고 영어나 수학이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특별시험을 봐 갖고서 그걸 인정했다든지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선 학점을 인정해 갖고서 9학점 내지 10학점 정도이상 이렇게 된다면 학생을 조기졸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연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된다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학점으로 인정 해 갖고서 6,000만원씩의 돈을 들여 갖고서 이거 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시면서 앞으로 교육부한테 안 될 부분은 정밀히 검토해 갖고서 또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하면 대학의 교무행정에 아주 능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한 사람을 협의위원으로 넣어 갖고서 논의해 갖고서 교육부에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갖고 이런 부분을 하지 않아야지 되죠. 이거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비를 삭감했습

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어느 나라에 얼마하고 삭감한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정보담당 이문재입니다.

저희 개발도상국가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부금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과 그후에 감액된 것은, 지원방법이 연수가 저희들이 불러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거기를 방문해서 하느냐 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러들여서 하는 초청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했다가 저희는 그 방식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방문연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처음에 불러 갖고 여기 와서 연수를 시키려고 했습니까?

●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아니 그건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한해서 초년도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없어서 저희는 요번에 방문연수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급하는 것은 컴퓨터는

기존 새것으로 전부 구입해 갖고 전부 보내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노후된 컴퓨터를 폐기하는 컴퓨터를 수거해서 그걸 다시 분해 조립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들지 않고 운송비만 들어갑니다.

● 이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우리 정도의 컴퓨터를 고성능인 것을 구입하지 마시고, 그렇게 노후된 것도 그쪽에서는 아주 뭉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리해 갖고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22인가요,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4억 들었죠, 금년에.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저희들 자체예산 4억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 4억, 8억 가지고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8억 갖고 했죠.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 이기수 위원

그게 매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 이기수 위원

금년 혁신박람회 물론 좋죠.

그런데 이게 4억씩이면 아마 본 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교육신문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북이라든지 다른 도에서도 다 4억 이상 이렇게 지역교육청에다가 부담을 시킨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박람회를 개최해 갖고서 관람하고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혁신박람회 같은데 4억씩 이렇게 들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 청주에 고등학교 5개 설립했다가 2개는 교육위원회 승인까지 난 걸 취소해 갖고서 학생 수 35명에서 39명까지 늘려 갖고 콩나물시루 교실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 감액하고 또 지금 본다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얘기는 물론 학교에 다 목적교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우선 학생들 콩나물교실 면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투자해야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매각수입이 19억 7,144만 4,000원 이라는.....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해당사항의 예산만 말씀해 주시고 여타 관계는.....

● 이기수 위원

아니 글썽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얘이죠, 그게 연관되어서 얘기하지 어떻게 그것만 덩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나도 요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을 감액해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사를 이용해 갖고서 학교마다 중학교 연구시범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까 연구학교인데도 있고 교과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 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사회복지사활용 연구시범학교는 작년부터 도입된 것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관련은 우리 교원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관이라든지 학교에 연계시켜서 부적응 학생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학교마다 요구학생이라든지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학생들에게 복지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입된 것으로써 시범학교가 2004년도부터 처음 시행되고 2005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인터넷고등학교하고 용암중학교 그래서 시범학교운영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씩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한 학교당 2,000만원입니다.

● 이기수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충북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00만원을 충주 종합복지회관에다 지원을 해서 충주여중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2,000만원은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 1,000만원은 프로그램개발비 이래 갖고 3,000만원씩을 해 갖고서 2차 년도를 지나서 지금 3차 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남복지회관에다가 그런 계획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한술

초등학교인지 어떤 학교인지를 지원하게끔 같은 케이스로써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평초등학교를 그 다음에 학교로 옮겨 갖고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사회공동복지모금회 같은데에서 그런 계획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이걸 못 받고서 지금까지 충주여중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여기에서 정책 교부된 것은 중·고등학교고 초등학교도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청주 산남복지회관의 운영연구학교는 저희들 청주시내 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지정되어 갖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건?

● 교육국장 노재전

네.

● 이기수 위원

어느 학교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남복지회관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처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사항은 사회복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연락이 안왔기 때문에 아직 인지를.....

● **이기수 위원**

그거는 1년 반인가 2년 전에 얘기가 됐던 겁니다. 추진하다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못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 교육예산으로써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갖고서 했다면 몇 개 학교를 더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말아야, 자체적으로.....

● **교육국장 노재전**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 **이기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글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재원이 교육부에서 받던 특별교부금이든 어느 단체에서 오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오던 간에 학교 뭘니까 컨설팅관계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던 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냐 얘기죠.

● **교육국장 노재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적극.....

● **이기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갖고서 이거 한번 다시 연락을 하셔 갖고서 초등학교에 이것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예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에 꼭 운영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2시 23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적은 재원가지고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5쪽에 세출 성질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편은 예산액이 1조 2,327억 9,200여 만원 거기에 인건비 구성비가 67%로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3회면 마지막 추경이 되는데 총 우리 1조 2,320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질별에 나온 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7.9%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포함하면 약 70%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알면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78.7%

●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우리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그리고 2006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이 78.7%,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고맙습니다.

두 번째, 28쪽에 재산수입이 있는데 총 주교육청 것 제가 궁금해서 드립니다.

2005년 기정예산이 2,28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시청 옆에 학교부지로 사났던 땅을 임대한 수입인 것 같은데, 3회 추경에 가 가지고 4,625만원이 또 늘었다 말이에요, 동일 건에서 늘은 겁니까, 그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릉초등학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 계약 연장하면서 대지료를 받은 겁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 다시 재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연장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임대료를 받는 거기 때문에.....

● 이상일 위원

그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저희들이 1년 단위로

● 이상일 위원

1년 단위로, 그러니까 금년에는 2,281만 5,000원을 받았는데 2006년에는 4,625만원으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금년도 사항입니다. 금년에 다시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 이상일 위원

연장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하면 내년 2006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2006년 5월까지 지금 계약이

● 이상일 위원

2006년 5월까지, 그래 하여튼 2005년보다 늘어난 거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보통반하고 종일반의 차이점은 뭔지 알려주

시고, 운영시간을 종일반은 아침 몇 시에 개원해 가지고 몇 시에 아이들을 보내는 게 종일반인지,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유치원은 보통반 4시간을 하는 반은 보통반인데 연장반이 있습니다. 4시간 이상 하는 반, 그 다음에 8시간 하는 종일반, 그 다음에 13시간 하는 에듀케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13시간?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이상일 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에듀케어, 지금 요것은 금년에는 8개 유치원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종일반이라고 그러면 거기 8시간에 해당하는 겁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네, 8시간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에 개원을 하는 겁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육가족은 되네요. 교육가족은 5시 퇴근하면 되는데, 교육가족이 아닌 보통 공무원들은 6시에 퇴근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1시간은 늘여줬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시다.

그래서 제가 금방 지금 예산이 된 걸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2006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종일반을 오후 6시까지 늘려주면 일반 공무원들은 6시 퇴근이니까 그 시간이 맞겠는데, 1시간 때문에 이게 대단히 곤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럼 아이들을 종일 데리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그 용도로는 종일반 환경개선 사업비로 금년에 지출한 것은 바닥난방, 그리고 환기시설, 냉방시설, 햇빛차단시설, 침구, 조리시설, 조리기구, 그리고 식기류와 살균소독기, 샤워시설, 화장실, 보안 및 안전장치 등에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되었습니다.

●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동성의 편리 그런 걸 해서 교육복지 수준에서 아마 이것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주시기 바랍니다.

101개 학교에 7억 3,9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해당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이름을 해 주시고, 이게 그렇다 보면 내년부터 신설학교에는 아예 이 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입니다.

금년에 저희 도내에 142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1학급 그리고 초등학교에 93학급, 중학교에 36학급, 고등학교에 12학급 이렇게 142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경사로와 그 다음에 승강기를 제외한 시설은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다면 그것은 내년에 특별예산을 세워서 한 다든지, 그리고 내년에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견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위치라든지

장소에 따라서 너무 급경사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데를 힐체어 같은 게 올라갈 수 있을까 폭도 협소하고 경사도가 급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꺾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마지못해서 하는 시설인데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학교를 새로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증·개축을 할 때는 아예 이 시설을 넣어버리면 좀 장애인들이 이 시설을 하는 건 편리하자고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숫자만 채우기 위해서 불편한 시설을 하면 결국은 나중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개 100개 학교에 7억 3,900이면 학교당 한 7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김남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17쪽에 충주예성여중의 축구부 합숙소를 이제 오랜만에 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요게 면적이 안나와 있어요. 산출근거에 면적이 몇 평당 미터나 되는지.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충주예성여중 합숙소 면적은 130㎡입니

다.

● 이상일 위원

130㎡면 평수로 한 40평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학생들 한 20명이나 25명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부 합숙소이기 때문에 마치 여관 마냥 스프링쿨러가 위에 달려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목적교실의 소방방법하고 운동부 합숙소의 소방방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른니까, 같습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스프링쿨러 설치해야 되는 기준은 다 같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러면 먼저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말에 법이 소방방법이 바뀌어지면 이 시설을 안해도 되는 거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택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다목적교실이고 그리고 합숙소이기 때문에 스프링쿨러를 해야 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다목적교실은 소방방법이 바뀌면 적용을 안해도 되지만, 요거는 먹고 자고 하는 말하자면 숙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상관없이 합숙소에 스프링쿨러를 해 줘야 한다 그 말씀이죠.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성용영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몇 번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에서 올해 예산의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하셨을 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시면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364억여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26억여원의 결손액 총당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입재원 116억여원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제가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국가부담수입이 364억이 그러면 축소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이신가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건 2004년도에 국고에서 내려오는 국고금이 세입결손으로 국고결손으로 우리한테 적게 내려온 당초에 비해서 적게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라는 것은 뭐고 그럼 본예산보다 그러면 최종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산이 아니라 돈이 덜 왔다는 얘기입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말씀이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돈이 365억 정도가 덜 왔다는 얘기입니다.

● 진옥경 위원

365억이 안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365억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국고에서 안내려왔다는 얘기죠.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그만큼의 결손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산은 저희들이 1조 한 얼마를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국고 세금이 안거치다 보니까 덜 거치다 보니까 365억이 덜 온 겁

니다. 안온 거죠, 그러니까.

● 진옥경 위원

덜 왔다, 들 왔다 하시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다 있고 하겠죠.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들어온 돈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총 결산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액수로 비교했을 때는 줄어든 게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덜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지, 제가 국고부담만으로도 제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요 국고부담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지적이 나오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재산수입 같은 것은 증이 됩니다. 증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2004년도에 국고에서 내려온 돈은 365억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제가 결산서에 2004년도 결산서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총액이 감되어서 나온 부분들을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거는 국고 교부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직원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책정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잉여금의 축소이유가 국고부담이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잉여금이 적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금액을 정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으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왜냐하면 세입·세출 공히 동일 금액으로 우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세출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 진옥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부

분이 지금 47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보통 교부금이 47억이고

● 진옥경 위원

미수납액이 47억이고 그 다음에 결산액과 예산 현액의 차이는 31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교육양여금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두 개를 합해서 45억하고 합해서 314억 고 합해서 365억이 결손이 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평소에 이렇게 늘 받아왔습니까?

2003년에도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매년 국고가 결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44억, 2003년도에는 87억, 2004년도가 제일 많이 결손했습니다, 365억.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액수에 비해서 지금 3백 몇 십억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숫자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세출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굉장히 많은 액수가 세출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액으로 볼 때는 제가 결산액의 총액으로 볼 때는 한 100억 정도인가가 줄어들었는데 지출은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결산내용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결산내용은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을 동일액으로 1조 2,443억 아니에요, 금년도 전 예산이 그거는 세입 재원을 따져서 똑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세입에 오버되어서 초과되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고가 덜 와서 그런 거지 세출예산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결손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2004년도에

너무 많은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의 여파로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어쨌든 들어오는 Input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이미 기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제가 잘 안 되거든요.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돈이 그만큼 못 보내 준 겁니다. 결손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 돈을 국가에서 안준 거죠. 당초 약속했던 금액에서 그만큼을 덜 준겁니다.

● 진옥경 위원

해 주겠다는 약속을 언제쯤 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게 3월에 확정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3월에 확정해서 국고에서 교부금 결정이 내려오는데 그때 확정이 됩니다.

● 진옥경 위원

3월 달에, 그게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란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렇죠.

●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구두로 한 약속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시설에 투자를 왕창 하고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005년도의 예산에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구두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공문으로 받으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그 공문을 좀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교육청에서 주장하시는 국가부담수입액이 줄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쪽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수 위원님은 그 해 편성해서 그해 다 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됐는지 그 여부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순세계잉여금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한 2000년도에 687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757

억, 2002년도에는 918억 이런 식의 액수들이 굉장히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지금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562억으로 가다가 2004년에는 173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순전히 국고가 덜 온 것에서부터 연유한 것인지 이에 대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에 공문으로 얼마를 주겠다 했는데 그것이 안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이나 그 이전에 그 다음해의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3월 달에 오는 그 약속을 미리 구두로 받든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아니면 추경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차이가 나게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두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너무 많은 예산들이 지금 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3차 추경예산을 봤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각 과목마다 전부 나오는 해는 참 유사 이래 처음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로는 숫자로 우리가 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살림이 이렇게 규모가 작다가 늘어나는 것은 쉽지만, 늘렸던 살림을 줄이기는 어쨌든 어느 항목에선가는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교 교육비가 전체 한 각 교육청별로 지역 교육청 한 4억 7,000정도의 교육비가 지금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도 초등학교 학교 교육비라든지 또 학교운영 기본경비,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학생후생복지, 교과연구지원, 연구시범학교 이런 각 항목에서 전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지 그것들이 열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의 여파

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금년 재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하자면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은 아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뿐이 아니고 우리 도 전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에서는 그런 정도에로서항을 전부 다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으로 설득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경비 기존의 어떤 지금 많이 사업 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들은 삭감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줄어든 것이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방과후 교육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고에서 들어올 때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여파 같은 것들을 상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5,700만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8,200만원에 해당하는 방과후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로서는 모든 예산이 1조를 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으로써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비를 받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기존의 혜택을 받다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을 분담시켜도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은 대상 인원수는 준계 아니고 우리가 국고보조하고 자체 재원하고 합쳐서 하는 경우에 인원을 책정하다 보면 과다 책정한 경우 인원수가 줄어서 정산한 내용이지 혜택을 못 받은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규정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제가 해마다 여쭙보기도 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느냐 그런데도 그 뭐랄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는 경우들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좀더 면밀한 파악 같은 걸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 대상학생은 해당학교에서 복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심사위원회

에 담임이 신청을 하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확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누락되는 학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구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이게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런 어떤 형평성에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과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거두어서 그 아이들 준다, 그래서 제가 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왜 또 장학금을 거두어 주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학비는 지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여러 가지 형평성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저도 면밀하게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뭐랄까 불공평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저도 조사해서 제안드릴 테니까 그것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정산액입니까, 8,200만원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 복지에 관한 예산은 전부 혜택을 준 다음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이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내려 왔네요. 이거는 국고부담인가요, 아니면 자체부담인가요?

영어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 10페이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특별교부금입니다.

● 진옥경 위원

특별교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역 교육청별로 중복이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개발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영어라면 수준별이라면 국가차원에서 수준별로 개발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내려보내면 될 텐데, 왜 이거를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것이 레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수준별이라 할 때는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어떤 수준이랄까 이런 것 계획차원에서, 만약에 각 지역별로 분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떤 체계로 학습지도자료 개발되는지요?

●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용 영어과 학습자료 개발입니다.

그 학습자료 개발 가운데에서 중학교는 학년별로 5종을 해서 1,2,3학년 ICT자료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6종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CT자료 개발입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ICT자료 개발이든 뭐든 그것이 지역적인 특성을 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ICT개발을 국가차원에서 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뭐가 다르니까, 과목을 나누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육과정관련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진사업이 그게 각 시·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맡은 것이 영어과 수준별 교육이고 또 이동수업관계 교육과정 이래서 각 시·도가 분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하는 거군요.

● **교육국장 노재전**

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특수학급 설치고 편의시설 부분이 있고 제천 청암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설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천 청암학교에는 예산지원이 요번이 처음인가요, 그 이전인가, 아니면 2006년도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채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순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제천 청암학교가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처음인가요?

● 시설과장 안세열

예.

● 진옥경 위원

지난번에 충주의.....

● 시설과장 안세열

송덕학교입니다.

● 진옥경 위원

송덕학교고 이번에 제천 청암입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NEIS에 의한 교원 전보발령 시스템 개선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다른 예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2006년도 예산인가 본예산에 이거 들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성립전

사용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립전이라고 표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저게 세입에는 표시 안하고 세출에 표시를 합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 진옥경 위원

그럼 이게 무슨 과에 해당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초등교육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들이 많이 감이 됐는데요. 목적사업비라는 건 목적이 딱 있고 그 목적에 해당하는 어떤 액수들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목적사업비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저희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 교육

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 자체가 감액이 됐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여기서 남은 돈은 그러면 교육부로 돌려보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돌아갑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뒤늦었지만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제가 어느 분 관련자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차 추경에서 성립전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이 사항도 국고의 특별목적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자료 개발을 착수해 갖고 외국인자녀 적응프로그램을 지금 청주대학교 e-Learning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설비를 감하고 있다 20%씩 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오고 있습니다. 8일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오늘까지 답변이 안오는지, 그러니까 하청을 받는다면 그 시설사업의 노임이 삭감이 되는 경우 거기까지 여파가 미치는지 아니면 어디서 시설비 삭감을 이렇게 액수를 하셨는가를 여쭙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지 저희들이 사전에 20% 절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바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 진옥경 위원

그러면 그 액수를 일선 현장에서 돌려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20%정도를 절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요번에 정리는 했지만 그걸 돌려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해마다 집행잔액은 돌려 받으십니까, 먼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지금 추경예산 같이 저희들이 감액 조정할 수도 있고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처리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근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부 다 받고 계시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운영상 시설비 잔액은 그냥 이번에 추경에 전부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글썽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

분인데 잔액이라는 것이 미리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잘못 전해들으신 거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 입찰차액 입찰을 보면 우리가 적격 심사를 해 가지고 78.2%인가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87.5%인가 그러면 12.5%가 남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불 적마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또 보자 아까 유치원 종일반 환경 개선의 항목들은 여기서 범위를 지정해서 내려보냅니까?

유치원 환경개선 아까 뭐 용도를 하시는데 유치원의 자율적인 어떤 환경개선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를 하신 겁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유치원의 종일반은 그 지역 희망하는 학생들을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의 종일반을 지정하거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아 지정을 합니까?

● 유아·특수교육담당 김정환

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에 통학버스교체가 있는데요. 저는 아주 산골이나 이런 학교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만 위원님들이 통학버스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를 교체하는 것 구매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었는데요. 가급적이면 임대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체 대상 버스가 11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운전원 퇴직자를 파악해 보니까 퇴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의 교체는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한 대 사면 몇 년 정도 씩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그게 대형은 8년, 중·소형은 6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면 대형은 몇 대고 중·소형은 몇

대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총 버스대수는 165대인데 대형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세요.

좀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퇴직을 안하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이거 그렇게 전환하라고 할 때는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운전원이 퇴직하면 그 대상이 퇴직하면 임차로 바꾸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운전원이 있는데 임차로 바꿀 수가 없어 가지고.....

● 진옥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죄송합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진천고 농촌우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청주여상 급식시설 확충, 그리고 본청 여직원 화장실 증축 이런 것들은 전부 제1회 추경예산인데요, 왜 이것이 연도 내 공사완료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설계가 7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는 시점하고 설계기간하고 너무 뜬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청주여상 급식시설 같은

건 설계기간이 1회 추경예산인데 설계를 11월 3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도의회 의결이 6월에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어차피 연도 내에 시공이 불가능한 사업과 시공이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근데 지금 6월 달에 저기가 통과가 됐는데 왜 11월에 청주여상 같은 경우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학교급식담당 김덕환입니다.

청주여상 급식시설은 지금 학교의 재단에서 선정부지문제로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 부지선정문제로 좀 늦어졌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런데 부지선정도 안하고 신청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거를 예산은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면적 같은 것들도 있고 할 텐데.....

●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처음에는 급식소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그 부지를 학교에서는 확정을 했었는데 아마 재단과 협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그 학교 내에서 저는 합의가 안된 상태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고 이렇게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의 내부 결정이나 이런 것들 최종 결정되어서 그 다음에 요구가 올라와야지, 거기 합의도 안된 사항들을 우리한테 예산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책정된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알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본청 여직원 화장실 증축이 왜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1회 추경인데 올해 공사완료 불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당초에 여직원 화장실 증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결과 부지면적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발굴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발굴에 따른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6월인데 지표조사는 10월 달에 하고

● 시설과장 안세열

왜냐하면 그 예산 성립되고 설계용역하고 또 설계용역 완료된 다음에 허가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걸 다 하고 지표조사를 하시게 된 것입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설계까지 마치고요.

● 시설과장 안세열

예.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재 보호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발굴

나온다든지 이러면 다시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1페이지에 사항별 설명서 551페이지에 보면 이원중 다목적교실 신축이 있는데 1회 추경예산으로 2006년 옥천군 교육경비 지원 협의에 따른 통합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도 내 공사완료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다녀온 것 같은데 그 교육경비 지원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진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한 건 없고 그쪽 옥천교육청에서 군청에 얘기해서 아마 재원을 보조받을 것 같이 그리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온 지도 꽤 됐고 그 당시에 예산책정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공문이 오고 가지도 않는 단계입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계획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분담해야지 왜 이런 식의 진전으로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추가요인으로 발생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관람석을 넣겠다 또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청에서 한번 얻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내년 추경에 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조서에 넣어서 절차를 밟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진옥경 위원

조정이 되거나 하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비보조를 독려하는 차원들도 있었고 지역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랬기 때문에 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났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매년 실시하는 건데 3회 추경에 4억 4,432만 1,000원을 갖다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니까?

당초 매년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형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형료 받은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답을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량비 및 운영수당 관계 이거는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나 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직 계속 선심성 수당지급 내지는 급량비를 지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관계 종일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천 시내에 제가 10월말 주

민등록상 파악된 코시안이라고 그러죠, 아시아계통에서 와 가지고 우리 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하는 사람들, 이 아이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 엄마들이 우리 나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가지고 모든 걸 생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10월말로 제가 파악한 게 11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따지만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외국인자녀라든지 또는 코시안이라고 그러죠, 우리 나라 와서 있는 그 양반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특별반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코시안 자녀가 저희들 교육청의 파악으로는 도내 276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11월 25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그 학부모들 간담회를 거쳐서 그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갖고 저희들이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지금 위원장님 말씀계신 그런 문제를 적극 고려

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진옥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진옥경 위원**

아까 컴퓨터를 수리해서 아마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그 과정을 잠깐 들으니까 답변을 듣는데 수리하는데는 돈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교육국장 노재전**

그렇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럼 누가 수리를 하길래 돈이 하나도 안들니까?

●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국무총리 산하에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부라고 하는 데에서 수거를 해서 그네들이 수리해서 하는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들어갑니다.

●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4일 2시 제3차 소위원회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훈,
위원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출석공무원 : 8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4일 (목요일) 11시 25분

議事日程 (제185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개회)

을 상정합니다.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소위원회 마지막날로 본 추
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심의하는 중에 질의를
드렸고 개인적으로 답변 받은 부분이 있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왜 이렇게 이월
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
명을 제가 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시정하
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은 받았지만 여기
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위원회에서 밝
혀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께 저한테 설명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
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사업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러한 마이너스 많은 그런 예산을 시행하게 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들어온 부분이 적어서 그렇다 정부지원금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상한 액수와 그 다음에 2005년도 3차 추경에 얼마가 지금 반영이 되고 2006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영이 됐으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사업설명자료에 추경예산 주요내용에서 364억이 부족한 부분 총액이 아니라 그 보존된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저한테 설명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영용

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 진옥경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지만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상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결손액에 대한 보존액을 자료에 명시를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365억 정도가 국고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 결손에 대한 보존액이 2006년도 본예산에 95억이 보존이 됐고 요번 3회 추경에 47억이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2억이 보존이 됐고 나머지 221억은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래서 221억이 총액 결손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미 보존이 170몇 억이고 그 다음에 44억은 우리가 사업을 방만하게 시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부분으로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분도 설명하셔야죠.

●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손된 것이 명시이월이 증가하다 보니까 20억 그리고 시설사업비를 감액을 저희들이 재편성한 게 44억원 그래서 한 64억원이 결손이 되었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요내용에 이 유로써 적합치 않다는 부분을 여기서 공

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서 제
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성영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 진옥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7분 속개)

●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소수의견으로
본청 시설사업비 중 도교육청 부지매입비
14억 8,000만원에 대하여 건축재정을 운
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

었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회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세출예산
각각 1조 2,327억 9,229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
여 주시고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
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예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
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훈,

위 원 송대현,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명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5. 12. .

위원장 성 영 용 成永龍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11. 21. (월)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5. 11. 22. (화) 11: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5. 11. 24. (목) 14:00	[제3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